

- 2025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-

민 간 위 탁 사 업 추 진 계 획

2024. 12.



법제정보담당관실

I. 개 요

□ 추진 목적

- 법령정보의 관리·제공에 관한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에 「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」 사업을 위탁하여 사업 수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

□ 수행체계

- 사업의 총괄 기획 및 관리·감독은 법제처에서 수행하되,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제작 및 업데이트, 홍보 등은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추진
- *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법제처에서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 전부를 직접 관리하였으나, 2012년부터 콘텐츠 개발·관리 업무를 (재)한국법령정보원에 위탁 수행 중

□ 위탁 방법

- 위탁 기간: 1년('25. 1. 1. ~ 12. 31.)
- 위탁사무 범위
 - 신규 콘텐츠 개발 및 고도화, 기존 콘텐츠 업데이트 등 유지·관리
 - 솔로몬의 재판 등 생활법령 홈페이지 내 부가서비스 제공 및 관리
 - 생활법령 대국민 활용도 및 만족도 등 설문조사, SNS를 활용한 퀴즈 이벤트 실시 등 생활법령정보서비스 홍보 업무
- 계약방법: 조달청을 통한 수의계약
- 위탁예산: 1,298,411천원

II. 수의계약 및 수탁기관의 선정 검토

1. 수의계약 체결 가능 및 필요 여부

☐ 검토 결과: 수의계약 체결 가능

- 국가계약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서 규정한 “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을 할 수 있는 자를 특정한 경우”에 해당
 - 법령정보법 제12조에서는, 법제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중 일정한 요건*을 갖춘 자를 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고,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지정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바,
 - *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를 사업 목적으로 하여 법제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, 시설 및 장비 요건을 갖춘 것
 - 법제처장은 한국법령정보원을 수탁자로 지정(‘20.11.25.)하여,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고,
 - 현재까지 수탁자로 지정된 기관이 1개 기관이어서 수탁대상자간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수의계약이 가능함
- (필요성) 이 사업은 법령을 분류·가공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·제공하는 서비스*로서, 법적 전문성과 콘텐츠 제작 노하우가 필요
 - * 「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
 - 연도별 개발 주제를 선택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의 특성상 콘텐츠 제작의 연결성과 통일성이 중요하므로,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

2. 수탁기관의 선정

☐ 수탁기관: (재)한국법령정보원

- 한국법령정보원은 법령정보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법령정보의 재분류 및 가공 업무의 수탁자로 지정(‘20.11.25.)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, ‘12년부터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 수탁

□ 수탁기관 적격여부 검토: 적절

○ (전문성) 한국법령정보원은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분야 전문 기관으로서, 최신 법령정보의 신속한 수집 및 정확한 제공에 특화

- 생활법령 담당 연구원 전원(25명)이 법학 전공자*로서 평균 5년 8개월 이상 법학 연구 등 관련 업무**를 수행하는 등 법령·판례를 이해·해석하는 데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함.

* 생활법령정보 담당 25명 중 법학박사 7명, 법학석사 13명, 법학학사 5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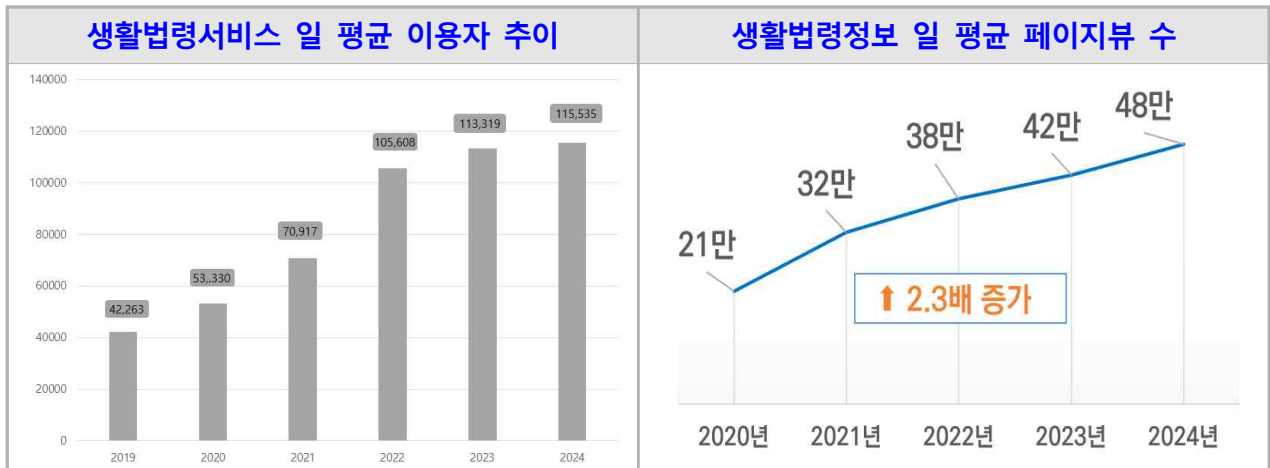
** 대학 법학연구소, 형사정책연구원, 법제연구원 등에서 법령 연구 담당

- 그 밖에 외국어 생활법령 담당 연구원(2명)은 해당 언어권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평균 5년 이상 번역 등 관련 업무*를 수행하는 등 해당 언어를 번역하는데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.

* 대법원, 재외공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번역 업무 담당

○ (성과) '12년 이후 12년간('12~'24년) 생활법령정보서비스 개발 및 관리업무를 수탁 수행하면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,

- 업무 수탁 이후 일평균 이용자 및 페이지 뷰 지속적 상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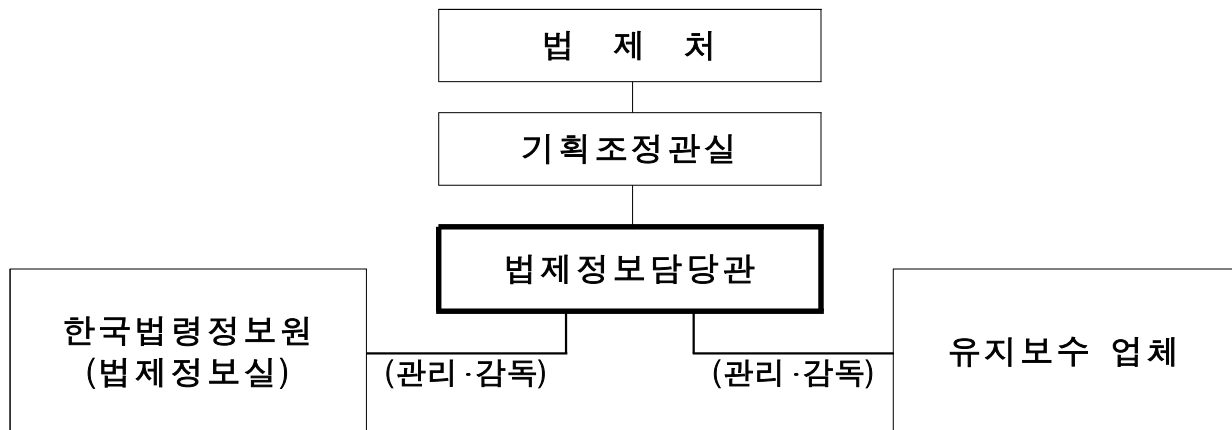
* 【페이지뷰 수: 48만(최근 4년 간 2.3배, 전년대비 11% 이상 증가)】

○ (신뢰성) 법제처가 지정한 법령정보의 재분류 및 가공 업무 등의 수탁자로서, 보유자산 및 업무수행실적 등을 고려할 때 책임능력을 담보할 수 있음

Ⅲ. 추진체계 및 위탁사무 범위

1. 추진체계 및 역할

□ 추진체계



□ 역할

기관명	역 할
법 제 처 (법제정보담당관)	- 생활법령정보 사업 총괄 기획 및 관리·감독 - 생활법령정보 사업예산 확보 - 생활법령정보 업무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-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선정 및 검수
한국법령정보원 (법제정보실)	-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신규 개발 및 고도화 - 생활조례 콘텐츠 신규 개발 -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및 생활조례 콘텐츠 업데이트 - 생활법령정보 부가서비스 개발 및 관리 - 생활법령정보 홍보 및 활용 교육 업무 - 2025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업무매뉴얼 작성 - 생활법령정보 연찬회 개최 지원 - 생활법령정보 대국민 활용도 및 만족도 조사
유지보수업체	- 생활법령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·보수 업무 *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의 유지·보수 업무는 정보화사업 예산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음('25년 433백만원)

2. 위탁사무의 범위

① 생활법령 콘텐츠 신규 개발 및 고도화, 업데이트 등 유지·관리

- (생활법령) 생활법령 콘텐츠 신규 개발 및 고도화
 - (책자형) 총 20건 이상의 신규 생활법령 콘텐츠 개발 및 고도화
 - * 책자형 콘텐츠 신규 제작 시 질의응답형 콘텐츠 병행 제작
 - (카드뉴스형) 총 50건 이상의 신규 콘텐츠 개발 및 고도화
- (생활조례) 주민 실생활과 관련된 주제의 생활조례 콘텐츠 신규 개발
 - 기존 생활법령 콘텐츠와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내 법령 정보 제공의 완결성 확보
 - 총 7건(조례 1,200건 내외) 이상의 신규 생활조례 콘텐츠(책자형) 신규 개발
- (외국어 생활법령) 재한외국인, 결혼이민자 등을 위한 외국어 생활법령 콘텐츠 신규 개발 및 고도화
 - 총 22건 이상의 신규 책자형 콘텐츠 및 50건 이상의 카드뉴스형 콘텐츠 개발(번역용역* 포함) 및 고도화
 - * 책자형 콘텐츠는 주요 언어(영어, 중국어 등) 집중 개발, 카드뉴스형 콘텐츠는 10개 언어 제공
 - 40건 이상의 알기쉬운 외국어 콘텐츠* 개발
 - * 복잡한 법령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하도록 표, 그림 등을 사용하여 시각화 한 콘텐츠
- (업데이트) 국문 콘텐츠는 법령 제·개정 사항을 파악하여 감수를 거쳐 격월 또는 매월로, 외국어 콘텐츠는 분기별로 업데이트 실시
 - * 생활조례 콘텐츠의 경우 매월 업데이트 실시
- 그 밖에 생활법령정보 유지·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

※ (참고) 콘텐츠의 고도화 및 업데이트의 차이점

- (고도화) 생활법령 콘텐츠간의 중복이나 내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콘텐츠를 통합·폐합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을 간략화하고, 부피가 너무 방대해진 콘텐츠를 분리·재작성하는 등 생활법령 콘텐츠의 질 개선을 위해 재제작
- (업데이트) 법령의 제·개정됨에 따른 변동사항을 기존의 콘텐츠에 수정·반영하는 등의 현행화 작업

② 생활법령정보 부가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

- '솔로몬의 재판' 사례의 주기적 개발 및 제공
- 국민신문고, 네이버 지식iN 등 생활법령정보 연계 콘텐츠 관리

③ 대국민 의견수렴 및 홍보

- (의견수렴) 대국민 설문조사, 전문가 및 유관기관 자문회의 등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이용자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
 -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내 사용자 의견수렴 게시판 운영, 대국민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
 - 전문가 및 유관기관 대상 자문회의 개최(법제처 주관) 협조
- (홍보) 온라인 이벤트, SNS 연계 서비스 및 생활법령정보서비스 활용 안내 교육 등 온·오프라인 홍보
 - 생활법령 퀴즈, 솔로몬의 재판 퀴즈 등 온라인 이벤트 개최
 -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상담직원 등 생활법령정보서비스의 주요 이용자 대상 안내 교육 실시
 - 생활법령 블로그 관리
 - 생활법령 뉴스, 방송 및 법제소식 원고 작성 등

④ 사업 실적보고 및 사업평가

- 콘텐츠 개발 및 업데이트 내용 등 사업추진 실적 보고(매주, 매월)
 - 콘텐츠 개발·업데이트 시 발생한 신규 개발 수요 및 근거 자료 등을 위탁기관에 제출
- 반기별 생활법령 콘텐츠 활용도 및 만족도 평가 등 성과평가 실시
 - 활용도 및 만족도 결과를 검토하여 개선 및 통·폐합 등이 필요한 콘텐츠 등 평가 결과를 위탁기관에 제출
- 위탁사업 감사 및 감사결과 이행사항 점검
 - 위탁사업 감사(전년도 12월) 시 지적사항의 개선·반영 여부 점검
 - 당해 연도 위탁사업의 수행계획 준수 여부 및 홍보예산 집행상의 위법 여부 등 감사 실시(12월)

Ⅳ. 향후 계획

- 업무위탁 관련 계약체결 의뢰('24년 12월, 운영지원과)
- 위탁계약 체결('24년 12월 예정, 조달청)
- 위탁업무처리, 성과평가 및 감독 지침 통보('25년 1월, 법제정보담당관실)